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1가단513293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허기원, 국중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성

피 고 1. B

2. C

3. D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2.

##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4,344,0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344,0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E은 F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대금채무 원금 7,074,438원 및 이에 대한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거쳐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21. 2. 25.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원리금 합계 13,306,013원이다.

나. E의 부친인 H은 2019. 5. 26. 사망하였고, H의 상속재산으로는 피고 B와 공유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15), 자녀들인 I, J, 피고 C, E, K, 피고 D(상속지분 각 2/15)이 있다.

라. H의 상속인들은 2019. 5.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가 4/30, I가 1/30, 피고 C이 6/30, K가 1/30, 피고 D이 3/30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이 사건 공유지분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H의 상속인들은 피고 B의 지분 1/2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L과 M에게 매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 이전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 채무자 피고 B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협의 이후 2019. 8. 22.경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2021. 2. 25.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합계 13,306,013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모두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E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9. 5. 26.경 P 주식회사에 대하여 3,316,242원의 채권, 주식회사 O에 대하여 515,164원의 채권을 각 보유하고, 서울 중구 Q외 197필지 내제R호와 그 부지들에 관하여 각각 1/6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E 소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1,380,27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 13,306,013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 당시 E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에서 본 것과 같이 E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받지 않고 이를 E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E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E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① H은 E의 배우자 S에게 2004. 12. 20. 1억 원, 2005. 8. 2. 4,000만 원, 2005. 11. 24. 1,200만 원, 합계 1억 5,2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뿐, E에 대하여 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E이 작성한 2021. 12. 21. 작성한 확인서에도 S이 위 돈을 H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② E이 2012. 3. 16. P 주식회사에 2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2019. 5. 26. 기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16,242원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E이 2012. 2.경 H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E은 뉴질랜드 이민을 계획하던 중 H으로부터 정착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E이 2021. 12. 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E보다 1년 먼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I도 H으로부터 정착금을 증여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E과 달리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일부 상속받았다.

####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8. 2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4억 2,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E은 14억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12억 2,8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중 상속지분 2/15에 상당한 금액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초과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44,0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마. 가액배상

#####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344,0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진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오기로 보인다.